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등을 위한 멘토링제도 등의
복지지원 규정〉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2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9.
3. 회부연월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이하에서 “초급간부”라 함)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초급간부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이하에서 “초급간부”라 한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전반적인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고,¹⁾ 최근 5년간 현역병의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²⁾ 군 간부에 대한 지원자가 하락하고 있음.³⁾

이에 대응하여 최근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

1) KOSIS 인구통계포털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4,322명이었으나 2026년 233,182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157,9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2026년도 국방부 예산에 따르면 병 인건비는 5년 전인 2021년에 비해 60.9% 인상되었으나, 부사관 인건비는 18.4%, 장교 인건비는 12% 인상에 그쳤음.(자료: 국방부, 국회예산정책처)

3) 참고자료 1. 최근 5개년 초급간부 봉급 변화 및 병장 봉급과의 비교 참조.

책적 노력과 보수 인상률 상향 등의 예산 반영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사급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급격히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고, 중·소위 장교의 충원율도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남.⁴⁾

□ 이에 개정안은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지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지지원’이 어떤 종류의 복지사업인지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초급간부 우수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 법률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 숙소지원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하여는 「군인복지기본법」, 전반적인 군인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상담지원 등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사항을 어느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4) 참고자료 2. 최근 3개년 각 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 참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022)이 국방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복지지원 근거를 「군인복지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최근 5개년 초급간부 봉급 변화 및 병장 봉급과의 비교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소위 1호봉 (병장비교)	1,727,400 (+1,118,900)	1,755,500 (+1,079,400)	1,785,300 (+785,300)	1,892,400 (+642,400)	2,017,300 (+517,300)
하사 1호봉 (병장비교)	1,678,100 (+1,069,600)	1,705,400 (+1,029,300)	1,770,800 (+770,800)	1,877,000 (+627,000)	2,000,900 (+500,900)
병장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주: 다양한 수당 등을 반영할 경우에는 하사 1호봉의 세전 월 보수액은 기본 봉급보다 커질 수 있음.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참조

2. 최근 3개년 각 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

(중·소위)

(단위 : 여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14,100	14,300	101.6%	13,700	13,600	98.8%	13,700	13,400	97.6%
해군	1,500	1,600	107.9%	1,500	1,500	104.7%	1,500	1,500	103.7%
공군	2,900	2,800	96.4%	2,900	3,000	101.2%	2,900	3,000	103.6%
해병	800	800	100.5%	800	800	96.7%	800	700	88.1%

(하사)

(단위 : 여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23,600	19,600	82.8%	22,800	16,000	70.0%	22,300	14,900	66.6%
해군	6,200	5,800	93.5%	5,700	4,700	82.3%	5,700	3,800	66.4%
공군	6,600	6,100	92.4%	6,500	5,900	91.4%	6,500	5,200	80.0%
해병	2,300	2,100	89.3%	2,300	1,800	77.5%	2,300	1,400	62.1%

* 충원율 : 운영인력 ÷ 정원

* 소위 정원은 따로 없으며, 중·소위 통합 정원으로 충원율 산출